

예산총칙

2017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02,031,000	12,060,930
일반회계	341,380,706	10,241,421
특별회계	60,650,294	1,819,509
공기업특별회계	24,495,356	734,86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495,356	734,861
기타특별회계	36,154,938	1,084,648
주택사업특별회계	15,273	458
의료보호특별회계	648,998	19,47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037,000	61,110
장학사업특별회계	8,938,369	268,15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94,231	11,82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22,791	21,684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76,596	23,298
수질개선특별회계	22,621,680	678,65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 당 없 음"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69,220천원으로 한다. 예비비는 재난상황시 재난지원금에 우선 사용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